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92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고동진·주호영·박준태

이인선 · 강대식 · 박정훈

김소희 · 조지연 · 강선영

박상웅 · 김정재 · 김장겸

이달희 · 최수진 의원

(14위)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은 유아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미디어 문해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콘텐츠의 이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 등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문해 교육이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초·중등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실시 근거와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 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나.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 다. 교육부장관은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수행하는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진흥)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 교"라 한다)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 해 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야 한다.
- 제10조의3(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2.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련 조사ㆍ평가
- 4.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조사
- 5.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련 활동 및 행사의 지원
- 6.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10조의2(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진흥) ① 교육부
	<u>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u>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u>한다.</u>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
	•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③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은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
	디어 문해 교육을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0조의3(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의 설치 ·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학교
	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이하

- <u>"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u>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수행한다.
- 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런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2.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 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 련 조사 · 평가
- 4.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 사
- 5.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련 활동 및 행사의 지원
- 6.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